산림파괴 예방 정책	개정차수	최종 수정일
	0	2023.02.10

1. 목적

- 1.1 본 문서는 효성(이하 '회사')이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과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친환경 기업으로서 사업운영 전반에서 발생가능한 산림파괴를 예방하고, 산림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본 정책의 수립 및 시행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1.2 본 정책은 UN 지구산림목표를 위한 전략계획(UN, Strategic Plan for Forests and GFGs)등 글로벌 표준의 방향과 활동을 존중하며, UN 당사국총회 산림 이니셔티브(UN, REDD+(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Conservation)),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적용 가이드라인(IUCN, Guidelines for Applying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)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.

2. 적용범위

- 2.1 본 정책은 회사의 본사, 국내/외 생산 및 판매법인과 지점,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범위에 속한 모든 법인은 본 산림파괴 예방 정책을 적용 받는다.
- 2.2 또한 회사는 협력사, 대리점, 아웃소싱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에게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산림파괴 보호의 필요성을 확산 및 전파한다.
- 2.3 회사는 본 정책을 기반으로 사업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산림파괴 리스크를 관리하되, 산림파괴 금지, 산림지역 보호, 벌채 및 목재제품의 이용 등에 관한 현지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

3. 정책

- 3.1 회사는 전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산림파괴 최소화에 앞장서며, 지속적인 환경정책 준수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재 조림을 통한 보상 약속인 순 산림파괴 제로를 이행한다.
- 3.2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사업장 내부와 그 주변지역의 녹지면적 유지, 보호활동 등을 통해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, 산림 보전, 산림 탄소 저장량 증진에 기여한다.
 - ① Future Reforestation: 회사는 자연 생태계가 번성할 수 있도록 신규 조림 및 재조림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.
 - ② End All Deforestation: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산림파괴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

산림파괴 예방 정책	개정차수	최종 수정일
	0	2023.02.10

가치사슬 구조를 위해 노력한다.

③ Carbon Offset: 회사는 산림 조성,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등의 산림탄소상쇄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잔여 배출량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.

4. 실행 방안

회사는 해당지역 또는 인근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경우, 협력사 및 원산지를 포함한 공급망이 위치해 있는 경우, 또는 사업운영으로 인해 해당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경우에 산림 보호-복원-확대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한다.

- 4.1 회사는 산림파괴 예방 정책을 이행하는 조직을 두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.
- 4.2 산림파괴 예방 조직의 주요 역할은 산림파괴 리스크 점검 절차 운영, 산림 보호-복원-확대 활동의 이행, 산림관련 고충 접수와 처리, 산림파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확산, 대외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한다.
- 4.3 회사는 국내외 법률 및 규제,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보호지역 카테고리(ICUN Category I ~ IV Protected Areas)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 지역으로 정의한다.
 - ① 국제사회보전지역(IUCN Category la 등)
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자연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고 다양한 생물종이 번영하는
 지역으로서 인위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았으며, 아주 작은 인위적 영향에도 파괴될
 수 있는 지역
 - ② 원시 야생이 온전한 지역(IUCN Category lb 등) 원시 야생의 자연생태계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, 원시 야생의 생활 양식을 보유한 원주민 공동체가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교육/과학 목적으로 최소한의 영향만을 허용하는 지역
 - ③ 국가 단위 보호지역(IUCN Category Ⅱ등) 국가단위에서 자연생태계 형성과정을 영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서 토종 동식물의 보호와 함께, 신앙적, 과학적, 교육적, 휴양/관광 등에 있어 중요성이 높은 지역
 - ④ 자연 문화 유적지역(IUCN Category Ⅲ 등)
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, 신앙 및 문화로 인해 형성된 자연생태계로서 고고학/인류학/역사학/지리학 관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지역
 - ⑤ 서식지 관리지역(IUCN Category IV 등) 국제적, 국가적, 지역적으로 중요한 동·식물 서식지 관리를 위한 지역으로서

산림파괴 예방 정책	개정차수	최종 수정일
	0	2023.02.10

목표종의 보호와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

5. 정책의 관리

5.1 회사는 최고 경영진 및 ESG경영 추진위원회를 통해 산림파괴 리스크를 관리 /감독하도록 한다. 주요 역할은 산림파괴 리스크 검토, 산림파괴 리스크 대응방안 심의, 그 밖에 산림의 보호-복원-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. 그 외 사업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산림파괴 분야 법률 및 규제 대응 등을 검토, 심의한다.

5.2 제보 채널 운영

① 고충 접수

회사는 사업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파괴 관련 고충 사항을 임직원 및 기타단체(개인)로부터 신고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.

② 고충 처리

회사는 산림파괴 신고 사례 대해 법원의 판례,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, 과거 내부처리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한다.

5.3 교육 및 정보공시

① 교육

회사는 임직원 대상 환경경영 교육을 통해 산림 보호-복원-확대에 관한 인식을 개선한다. 산림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며, 업무 과정에서 산림보호를 고려하도록 한다. 또한 산림파괴 관련 이슈 발견 시,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하다.

② 정보공시

회사는 산림 보호-복원-확대 활동 및 성과 정보를 홈페이지,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별도의 채널을 활용하여 공시하고 관련 정보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접근하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공시한다.

끝.